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나216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나21679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7 선고 2021가단87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임지아

변론종결 2023. 11. 21.

판결선고 2023. 12. 1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7. 선고 2021가단87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E 전 2,926㎡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21.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768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E 전 2,926㎡ 중 각 피고들 지분 1/3 중 각 34/3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I, J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I, J을 대위하여 피고들 앞으로 2021. 8. 6.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원고가 I, J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2호증), 그러나 피고들 명의의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청구취지 기재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피고들의 선대인 G에게 분배되어 I, J의 피상속인인 F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15호증의 1), I, J은 말소등기를 청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I, J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오성우, 판사 박이규